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교내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교육의 기회 균등과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수업료 납부가 부담이 되는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 수혜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생 대상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자체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기준)

장학금 수혜자 선발은 장학금 종류에 따른 선발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교무부장 1명
- 위원: 학년부장 3명, 음악부장 1명

제4조(선발방법)

1. 장학생 선발 위원회에서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장학생 후보자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2. 교내 장학금은 각종 외부 장학금, 법정 면제, 학비 지원 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는 수업료를 합하여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3. 성적 우수 장학금의 경우에는 수업료의 범위 외에서도 지급이 가능하다.

제5조(교내장학금 종류 및 대상, 장학금액)

1. 오디션 우수 장학금

- ① 대상: 본교 신입학 오디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아 입학한 학생 1명
- ② 금액: 수업료의 50%
- ③ 수혜 기간: 1년 (단, 1학기 종료 후 재심사하여 제8조(자격상실)에 해당되면 수혜 자격이 박탈된다.)

2. 성적 우수 장학금

- ① 대상: 학년별로 각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합산 성적이 1등과 2등이면서 학교생활 태도 (예: 근태 등)가 성실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 ② 금액: 학기당 1등 50만원, 2등 40만원
- ③ 수혜 기간: 학기당 1회

3. 나무 장학금 (우수 포트폴리오)

- ① 대상: 본교 2, 3학년 재학생 중 신청을 받아 학년별 2명씩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본 장학금은 1학년은 해당되지 않음)
- ② 금액: 1인당 60만원
- ③ 선발 방법: 나무 장학금 (우수 포트폴리오) 신청서를 작성한 학생 중 총 4명을 장학생 선발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④ 신청 및 지급: 1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에 신청하며, 2학기 초에 지급한다.
- ⑤ 포트폴리오 기재 기간 (총 3학기 동안의 활동을 기재)
 - 2학년: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 3학년: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제6조(장학금 별 신청기간)

장학금 수혜 희망자 혹은 장학금 수혜자의 담임교사는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오디션 우수 장학금

수혜 분기	신청 기간	신청자
1~2분기	1학년 : 입학 직후	담임교사
3~4분기	해당 학기 기말고사 종료 4주 이내	

2. 성적 우수 장학금

수혜 학기	신청 기간	신청자
1학기	해당 학년 1학기 기말고사 종료 4주 이내	담임교사
2학기	해당 학년 2학기 기말고사 종료 4주 이내	

3. 나무 장학금 (우수 포트폴리오)

수혜 학기	신청 기간	신청자
2학기 1회	해당 학년 1학기 기말고사 종료 4주 이내	본인

제7조(제출서류)

1.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담임교사는 다음 서류를 각 1부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장학생 선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공통서류
 - 학기말 성적표
 - 장학생 서약서 (선정 후 제출)
- ② 나무 장학금 (우수 포트폴리오)
 - 장학금 신청서
 - 학교생활기록부
 - 담임, 학과장 추천서 각 1부씩
 - 포트폴리오에 대한 증빙서류

2. 장학생 선발 위원회는 해당 학생을 심의한 후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본교 장학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의록 1부
- 증빙 서류 각 1부

제8조(자격상실) 결격사유

장학생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없다. 또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장학금 수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생 선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 1. 휴학 또는 전학,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한 학적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 2. 사회봉사 5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 3. 교내/외 활동 중 물의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 4. 학교규정에 의한 선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중복 수혜자로 판명될 때
- 5. 장학금 신청 서류의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 6. 학업성적이 불량하였을 때(전체평균 70점 미만)
- 7. 출석성적이 불량하였을 때(출석일수 70% 미만)
- 8. 차액 분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 9. 기타 장학생 선발 위원회에서 지급 중단이 결정된 자

제9조(기타)

- 1.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2. 본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0조(동점자 기준)

1. 과목 평균의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확인
2. 출결사항 파악 : 미인정 지각, 결석, 조퇴를 확인하여 횟수가 적은 학생에게 지급
(미인정 지각 및 조퇴 3회를 미인정 결석 1회로 산정)
3. 동석차 학생들의 숫자만큼 정해진 장학금 금액을 동일분배하여 지급

위 규정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